

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[시행 2026.04.20]
(일부개정) 2026.04.20 조례 제3357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기획예산담당관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580-2300

제5장 청년 지원 <개정 2023.9.13.>

제30조(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)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월세 자금(이하 “월세 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무주택 1인 가구(청년 단독 거주자)
 2.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주거지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
 3.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
- ②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.
- ③ 지원자가 많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.
-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.
1.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
 2.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LH매입임대주택, LH전세임대주택) 거주자
 3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
 4.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
 5.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경우
 6.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⑤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,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3.9.13.]